

# 1. 사업개요



- (고용촉진장려금)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\*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

\*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, 중증장애인,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등

# 2. 지원 절차



사업주



① 지급 신청서 제출



고용센터



② 지급 및 지도·점검

### 3. 지원 내용



#### 지원대상

- 모든 사업주(다만, 지원제외 근로자, 지원제외 사업주,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)



#### 지원요건

-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\*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(구직등록 필요)
  - ※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
    -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
    -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: 중증장애인,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
- 구직등록은 고용센터(work-net)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\*에 하여야 함
  - ※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산업인력공단, 한국장애인고용공단,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, 고령자인재은행,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
- 6개월 이상 고용유지
  - ①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: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(8~9p 참고)
  -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: 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됨(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)

구 분	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
중증장애인	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
여성실업자	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(지원)대상자

##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

연번	취업지원프로그램 (주관부처 및 운영기관)	이수한 사람의 범위
1	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 (고용노동부)	<p>- (1)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(Ⅰ 유형 중 청년 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)로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, 동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. 단,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</p> <p>- (2)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(Ⅰ 유형의 청년 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)로서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,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. 단,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</p>
2	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「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」 (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)	- 「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」(2개월 이상 과정)을 마친사람으로써 고용 보험 피보험자 가입이력이 있고, 구직등록 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만 35세이상의 사람
3	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(여성가족부)	-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
4	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「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」 및 「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」 (법무부)	<p>- 「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」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.</p> <p>- 단,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</p> <p>-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</p>

연번	취업지원프로그램 (주관부처 및 운영기관)	이수한 사람의 범위
5	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「직업능력개발훈련(정규훈련, 맞춤형훈련, 맞춤형훈련)」(고용노동부)	- '직업능력개발훈련(정규훈련, 맞춤형훈련)'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- 단,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 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
6	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「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」(고용노동부)	-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'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'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
7	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「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」(고용노동부)	- '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'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. - 단,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
8	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「기본교육」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「취업워크숍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「직업교육훈련」(국방부, 국가보훈처)	-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,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'취업워크숍'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- 직업교육훈련(사회적응교육, 직업교육훈련,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)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
9	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「취업지원프로그램(재도약프로그램)」(고용노동부)	-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'취업지원프로그램(재도약프로그램)'을 마친 사람 중 50세 이상인 사람. 다만,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
10	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른 「일반고 특화훈련과정」(고용노동부)	-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19조제2항제5호가목 '일반고 특화훈련 과정'을 마친 사람
11	지방관서별 자체 선정·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(고용노동부)	- 지방관서별로 「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」에서 선정한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지방관서별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로서 고용센터의 '지역 맞춤형 프로그램'을 수료한 사람
12	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(고용노동부)	-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,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(2~3개월) 프로그램 제공

\*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



## 지원수준 및 한도

-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~60만원 지원

유 형	회차별 지원액 (6개월 단위)	연간총액
우선지원대상기업	360만원	720만원
중견기업	360만원	720만원
대규모기업	180만원	360만원

\* '25. 1. 1. 이후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에 따른 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(단, 사업주가 신청기간(고시 제19조제2항) 위반시에는 지원제외 대상임)

\*\*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이면서 동시에 고용보험법상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지원금액으로 지급

- (지원한도)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(소수점 이하는 버림)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: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(소수점 이하는 버림)에 해당하는 인원. 다만,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
-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: 3명



## 지급기간 및 주기

-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
- 다만,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,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·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

## 4. 지원제외 근로자



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

###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

\* 다만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

- \* 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,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, ㉡ 휴직·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, ㉢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㉣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
###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

-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㉠ 중증장애인 ㉡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
- ② 국민취업지원제도(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)를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
  - ㉠ 기초생활수급자 ㉡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㉢ 북한이탈주민 ㉣ 신용회복지원자
  - ㉤ 결혼이민자 ㉥ 위기청소년 ㉦ 여성가장 ㉧ 건설일용직 ㉨ 장애인 ㉩ 니트(NEET)족
-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
  - ㉠ 직업능력개발훈련(정규훈련, 맞춤형훈련) ㉡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
- ④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를 이수한 사람
- ⑤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
- ⑥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
- ⑦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만65세 이상 고령자

- ② 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
- ③ 사업주(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
-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
-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. 다만,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-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- ⑦ 구직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
- ⑧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

## 5. 지원제외 사업주



- ①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(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)을 새로 고용한 경우
- 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, 국회 등 「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
- 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
- ④ 일반유희·무도유희·기타주점업,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
- ⑤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⑥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(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⑦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
- ⑧ 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  
(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)  
- (신청기간)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

## 6. 고용조정 제한 의무



☞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 까지(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) 고용조정 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,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

\* 다만,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대상 아님

☞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, 정년, 계약기간만료,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이 아님